

#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안 번호	제 9 0 호
----------	---------

제출연월일 : 1996년 8월 29일

제 출 자 : 예 산 군 수

## □ 제 정 이 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례로 정하여 건강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려는 것임.

## □ 주 요 골 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회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함(안 제2조).
- 협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 군민의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기타 사항과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토록 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 참 고 사 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보건 65310-1123('96. 5. 3)호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준칙 시달.

예산군 조례 제 호

##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민의 건강증진 사항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계장  
이 된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